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2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유영하·권영세·김정재

이만희 · 임종득 · 김상욱

강대식 • 이인선 • 성일종

김기웅 • 권영진 • 백종헌

박상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제7항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70%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 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 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u>(참전명예수당)</u> ① ~ ⑦ (생 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8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
	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제 7항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70% 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